##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73 발의연월일: 2021. 3. 3.

발 의 자:김성원・이주환・윤영석

배현진 • 박대수 • 윤상현

추경호・김 웅・김형동

이종배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사용종료검사 또는 폐쇄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고, 사후관리를 위하여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부장관은 해당 검사 비용인 수수료를 환경부 고시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에 근거하여 징수하고 있는 바, 법률 에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용종료검사, 폐쇄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 따른 행정처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법률 제 호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제59조(수수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5. 제5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검사
	를 받으려는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